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명안전관련 업무 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68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명안전관련 업무 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8일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과건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

Ⅲ. 검토의견

1. 생명안전관련 업무 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등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도록 의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u>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현행	개정안
	<u>당하는 사업의 업무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u> <u>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u> <u>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u> <u>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u>

현행	개정안
	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 자 업무 라.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 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사.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공업무 아.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6 호의2가목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 중 공중의 일상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 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 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	개정안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나.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3.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나. 검토의견

1) 총괄의견

개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려는 업무는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 또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개정안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금지 대상 업무 >

개정안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금지 대상 업무		현행법
제1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현행 파견법및 시행령상 파견금지 업무
	하역업무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응급의료종사자 업무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와 유사
	항공업무	
	도시철도법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제2호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노조법상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업무를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가 담당할 경우 안정적인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안정된 고용 하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일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헌법」 제10조¹⁾에 의하여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강한 수준으로 제약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²⁾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³⁾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계약의 자유 제한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헌재 2008. 9. 25. 2005헌바81

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휴가·휴직, 근로자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까지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이인영의원이 개정안과 함께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61호)의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경우, 고령자로서 해당 분야에 숙련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규정⁴⁾하고 있으므로, 향후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산업재해는 고용형태 뿐 아니라 근로자의 전문성, 근로조건, 사용자의 의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시설·설비의 안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가 산업재해 예방과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넓은 범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대상 업무를

-
- 4)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61호) 제5조(생명안전업무 사업주의 직접고용 등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로서 해당 분야에 숙련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의 경우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인지, 해당 업무영역에서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상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고용형태 제한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핵심 업무에의 집중을 위한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와 노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파견을 금지하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사용도 금지하게 되면 결원 발생, 일시적·간헐적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상 원칙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영의원은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61호)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58호)을 함께 발의하였으며, 이들 제·개정안은 개정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⁵⁾

2) 주요 업무별 검토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동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무임.

동 업무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다단계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계약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공사현장의 모든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건설공사는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이 많으며, 공사현장별로 또는 공정별로 채용하는 일시적 인력수요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② 하역업무

개정안은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5) <참고> ‘제정안 및 개정안에 따른 금지대상 업무 비교’ 참조

지역의 업무⁶⁾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동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무임.

동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라기보다는 하역업무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공급하는 관행을 고려하여 「직업안정법」 상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바, 모든 하역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하역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력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지역의 업무에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은 철도사업 중 하역업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역업무는 동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6)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2호),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제3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4호)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업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변동성으로 인해 다수의 부두에서 항운노동조합 연맹에 의한 작업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한 노조원 중 상당수가 임시조합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③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개정안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고,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에 그 업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동 업무는 그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담당 업무의 난이도 및 책

임이 상이한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안경사 등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한편, 의료기관의 경우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유연근무와 대체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국가보훈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동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④ 선원의 업무

개정안은 선원의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동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음.

동 업무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근로형태가 달라 「근로기준법」 중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하고⁷⁾ 「선원법」에 근로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등 특수성이 있고, 장기간 운항하는 외

7)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항선박 또는 어선의 경우 선박의 운항일정과 조업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선원을 충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기사 및 국적 선원의 고령화⁸⁾⁹⁾로 인해 외국인 선원 및 정년을 초과한 고령 선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국적선원의 급속한 고령화, 내국인의 선원 기피, 어업인의 감소 등으로 선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간제 형태의 근로자채용을 금지하는 경우 선박 운행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동 업무는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

8) < 내항상선 국적 해기사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 체	6,479	6,241	5,797	5,789	5,945
60세 ↑	3,451	3,635	3,075	3,310	3,400
60세 ↑ 비중	53.3	53.9	53	57.2	57.2

※ 자료 : 해양수산부·선원복지고용센터, '20~'24년 한국선원통계연보

9) < 국적선원 연령 현황(20톤 이상) >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적선원수	13,982	13,666	13,743	13,543	13,261
고령자(50세이상) 수	11,151	10,907	10,848	9,902	10,560
고령자 비율(%)	79.8%	79.8%	78.9%	73.1%	79.6%

※ 자료 : 선원통계연보

버스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 등이 포괄되는바, 시내버스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산업재해는 곧 시내버스 등에 탑승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버스 특성상 수습기간 동안 신규채용자의 운전 습관 등을 검증하여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수습기간 동안의 기간제 채용 이후 정규직 전환이 요구되며, 현재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운전자 수 부족¹⁰⁾으로 경력이 풍부한 정년퇴직 운전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아¹¹⁾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도시철도법」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로서 [별표 1]로 정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한 내용임.¹²⁾

10) 노선버스운전자의 수는 2019년 89,980명에서 2023년 85,417명으로 감소

11)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비정규직 근로자 중 80%가 정년 이후의 축적직으로서, 61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운전근로자 중 19.2%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한편, 개정안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혈액공급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이 중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업무이며 다만 공중위생사업과 의료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 아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다. 항공기 조종 업무
- 라. 객실승무 업무
-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Depot Maintenance, 대규모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여 수행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는 제외한다] 업무
-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년 공익사업으로 규정된 업무임.¹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의하고, 필수공익사업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도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를 정하여 해당 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¹⁴⁾

개정안은 이러한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사업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업무의 정지·폐지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있어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일시·간헐적 사유로 특정 분야의 인력이 단기간 필요한 경우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어 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

문 의 처
02)6788-5535

15) 한국항공협회는 조종·정비 등 항공전문인력은 단기간 양성이 불가능하고 해외경쟁국 인력유출로 인력부족이 심화된 상황으로 고령자 조종사와의 기간제 계약이 필요하며, 항공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 자격 훈련을 위해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를 운영하여 안전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	제정안과 개정안에 따른 금지대상 업무 비교
-------------	--------------------------------

제정안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비 고
별표에 따른 생명안전업무 (필수유지업무와 동일, 한국은 행사업 제외)	도시철도법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노조법상 필수공익 사업 또는 필수유지 업무와 유사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 액공급사업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항공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현행 파견법및 시행령상 파견금지 업무
	하역업무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선박직원의 직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 및 제 65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 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에 따 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활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